

경운대학교 벽강교양대학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에 따라 경운대학교 벽강교양대학(이하 “벽강교양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벽강교양대학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회친화형 인성, 인문, 창의교육을 통한 사회 친화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양 교육과정 목표, 기획, 운영에 관한 총괄<개정:2016.09.01.>
2. 교양 교과과정 개발 및 편성
3. 교양 교육과정의 운영 및 조정, 학사관리
4. 교양 교육과정의 평가
5. 교양교육 예산의 운영, 조정 및 지원
6. 건학이념 구현의 기초교양 인증제(KW인성 인증제) 운영
7. 공동 교양교육(교양 연합교육체계)운영 및 학사관리
8. 기타 벽강교양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조직) ① 벽강교양대학에 기초교육학부, 인문창의학부, 글로벌학부, 인덕원, 스토리라이팅센터 및 행정실을 두며,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2016.09.01.>

1. 기초교육학부는 문제해결적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학문적인 기초소양을 담당한다. (“ABC” series : Analysis, Basic, Communication)
2. 인문창의학부는 창조와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창의와 융복합 사고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을 담당한다. (“I” series, I-Think : Interdisciplinary, Innovation, Imagination)
3. 글로벌학부는 글로벌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 영역의 교육을 담당한다. (“C” : Communication)
4. 인덕원은 세계와 공감하고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윤리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건학이념구현을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을 담당한다.(“E” : Ethical & Experiential)
5. 행정실은 벽강교양대학 행정 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 및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6. 스토리라이팅센터는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2016.09.01.>

제4조(위원회) ① 벽강교양대학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2017.03.01.>

1. 벽강교양대학 교양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교양 교육 전반에 관하여 심의한다.
2. 교양 교과 과정 개발 및 편성은 벽강교양대학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운영공동체(2WINNER) 운영위원회가 의결한다.

3. 벽강교양대학 운영위원회는 학부별 소위원회(이하 “각 학부교육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4. 벽강교양대학 교양교육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서는 교양 교육의 전문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교양교육과정을 평가·분석한다.
5. 벽강교양대학 교양교육연구소는 교양교육 관련연구, 교양교육 담당교수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및 연구를 진행한다.
6. 기타 벽강교양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는 벽강교양대학의 학장 및 학장이 추천하는 본교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학기 중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조(학장) ① 벽강교양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벽강교양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책임교수 등) ① 벽강교양대학에 학부교육 운영을 고려하여 1인 이상의 책임교수를 둔다.

- ② 책임교수는 각 학부별 교과목의 개설, 교양교육과정의 현장적합도 및 평가, 교과목 운영의 질 관리, 공동 교양교육 운영 및 질 관리 및 학생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학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은 교양교육의 통섭적 문제해결 및 현장 적합도 강화를 위해 타과대학에 복수 소속된 교원이 임명될 수 있다.
- ④ 소위원장은 교양 교과목 운영과 강사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교과목 신설·폐지 등) ①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사회수요 및 신설요청에 따라 책임교수가 교양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이를 벽강교양대학운영위원회와 교육운영공동체(2WINNER)에서 심의하여 신설한다.

- ② 신설된 교양교과목은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공지하고, 책임교수는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 ③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폐지수요 및 폐지요청에 따라 책임교수가 교양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이를 교양교육 소위원회에 폐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벽강교양대학운영위원회와 교육운영공동체(2WINNER)에서 심의하여 폐지한다.
- ④ 폐지된 교양교과목은 각 소위원회 통보하고 책임교수는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⑤ 교양교과목의 신설, 폐지, 변경, 운영 등 교양교육 전반에 관해 벽강교양대학 학장, 책임교수 등으로 구성된 벽강교양대학운영위원회를 분기 1회이상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한다.

제8조(운영 등) ① 교양교과목은 교양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에게 우선배정하며, 교양교과영역별로 전임교원이 1강좌 이상을 반드시 담당하도록 한다.

② 기타교양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양 인증제) ① 본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기초교양 인증제(이하 “KW인성인증제”라고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인증기준은 인덕원의 윤리영역, 새마을영역, 실천영역, 세계시민의식영역 등 4개영역 교과 중 2개 교과목을 B학점 이상 취득하고, 봉사활동 50시간 이상 이수함을 기준으로 한다.<개정:2017.03.01.>

제10조(공동 교양교육) ① 인문학진흥과 세계시민의식 교육확대를 위해 교양분과 교육운영공동체(2WINNER) 실행위원회를 통해 공동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6.09.01.>

② 기타 공동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등) ① 교양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는 벽강교양대학 교양교육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개선한다.

② 기타 교양교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학사운영세칙) ① 벽강교양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벽강교양대학 교양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6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